|  |  |  |
| --- | --- | --- |
| **專利 행정 법집행 방법**  국가지식재산권국 제60호  《專利 행정 법집행 방법》이 국무(局務)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에 공포하며,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장 田力普  2010년 12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專利 행정 법집행행위를 규율하고 특허권자와 사회공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專利법》, 《중화인민공화국 專利법 실시세칙》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전개하는 專利행정 법집행, 즉 專利권 침해 분쟁처리, 專利분쟁 조정 및 專利모조행위 조사처리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권 침해분쟁을 처리 시에는 사실에 의거하고 법률을 준칙으로 하며 공정, 적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분쟁을 조정 시에는 자율, 합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실을 규명하고 시비를 가르는 토대에서 당사자의 상호 양해를 구하여 조정합의를 달성시켜야 한다.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모조행위를 조사처리 시에는 사실에 의거하고 법률을 준칙으로 하고 공정, 공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가하는 행정처벌은 불법행위의사실, 성질, 사정 및 사회에 가한 피해정도에 상당해야 한다.  **제4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전문기구를 설치하거나 전직 법집행요원을 배치하여 專利행정 법집행을 전개해야 한다.  안건 처리요원은 국가지식재산권국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발급한 專利행정 법집행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안건 처리요원이 공무를 집행 시에는 옷차림을 바로 해야 한다.  **제5조** 중대 영향이 있는 專利권 침해안건, 專利모조안건에 대해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필요 시 專利업무 관리부서를 조직하여 처리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  행위 발생지가 2개 이상의 성, 자치구, 직할시와 관련되는 중대 안건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專利업무 관리부서에서 국가지식재산권국에 처리 또는 조사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행정 법집행을 전개할 때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닥친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한다.  **제6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현지 실제에 따라 실제 처리능력이 있는 시, 현급 인민정부의 專利관리부서에 위탁하여 專利모조행위를 조사 처리하고 專利분쟁을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위탁측은 수탁측의 專利모조 조사처리 및 專利분쟁 조정 행위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실시하며, 아울러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지명한 안건 처리요원이 당사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기피해야 하며, 당사자는 그에게 기피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안건 처리요원의 기피는 專利업무 관리부서의 책임자가 결정한다. 기피여부에 대해 결정하기 전에 기피 신청대상자는 본 안건과 관련한 업무 참여를 당분간 정지해야 한다.  **제2장 專利권 침해분쟁 처리**  **제8조** 專利업무 관리부서에 專利권 침해분쟁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여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청구인은 專利권자 또는 이해 관계자여야 한다.  (2) 명확한 청구대상자가 있어야 한다.  (3) 명확한 청구사항과 구체적인 사실, 이유가 있어야 한다.  (4) 專利업무 관리부서의 안건 접수 및 관할 범위에 속해야 한다.  (5) 당사자가 당해 專利권 침해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  제1항에서 지칭한 이해관계자에는 專利실시허가계약의 허가대상자, 專利권자의 합법적 승계자가 포함된다. 專利실시허가계약의 허가대상자 중 독점 실시허가계약의 허가대상자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배타 실시허가계약의 허가대상자는 專利권자가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만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일반 실시허가계약의 허가대상자는 단독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專利업무 관리부서에 專利권 침해분쟁 처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아래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주체자격증명. 즉 개인은 주민신분증이나 기타 유효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단체는 유효한 영업집조나 기타 주체자격증명서류 부본과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2) 專利권 유효증명. 즉 專利등기부 부본, 또는 專利권증서와 당해 연도의 專利 연간 유지비 납부 영수증.  專利권 침해분쟁이 실용신안이나 의장과 관련되는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청구인에게 국가지식재산권국의 專利권 평가보고서(실용신안 검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수에 따라 청구서 부본 및 관련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 청구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책임자의 성명, 직무, 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대리기구의 명칭, 주소  (2) 피청구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3) 처리 청구사항과 사실 및 이유.  관련 증거와 증명자료는 청구서의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다.  청구서에는 청구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제11조** 청구내용이 이 방법 제8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이내에 입안하고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3명 또는 3명 이상의 홀수로 된 처리요원을 지명하여 당해 專利권 침해분쟁을 처리하게 해야 한다. 청구내용이 이 방법 제8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수리를 하지 않음을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2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입안한 날로부터 5일 근무일 이내에 청구서 및 그 별첨의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 그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청구인 수에 따라 답변서 부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피청구인이 기한이 지나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할지라도 專利업무 관리부서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답변서를 받은 날로부터 5일 근무일 이내에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3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권 침해분쟁을 처리 시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조정을 할 수 있다. 당사자 쌍방이 합의를 달성한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당사자 쌍방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으며, 조정 미결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4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권 침해분쟁을 처리 시에는 안건 상황의 필요에 따라 구두 심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구두심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적어도 구두심리를 실시하는 3일 근무일 전에 구두심리 일시,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참석을 거절하거나 또는 허락이 없이 중도에서 퇴장한 경우, 청구인에 대해서는 청구를 철회한 것으로 처리하며 피청구인에 대해서는 궐석처리를 한다.  **제15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구두 심리를 한 후 구두심리 참가자와 심리요점을 기록하고 대조확인 후 오류가 없는 경우 안건 처리요원과 참가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專利법 제59조 제1항에서 지칭하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 專利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청구항의 내용에 준한다.”라 함은 專利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청구항의 기술특징에서 확정한 범위에 준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며, 이에는 기재된 기술특징과 대등한 특징에 따라 확정한 범위도 포함된다. 대등한 특징이란 기재된 기술특징과 기본상 같은 수단으로 기본상 같은 기능을 실현하고 기본상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동시에 소속분야의 일반 기술인원들이 혁신적 노동이 없어도 상상할 수 있는 특징을 가리킨다.  **제17조** 조정협의를 달성하거나 청구인이 청구를 철회한 경우는 제외하고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專利권 침해분쟁을 처리할 때 처리결정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2) 당사자가 진술한 사실과 이유  (3) 권리침해 행위 성립여부를 인정하는 이유와 의거  (4) 처리결정이 권리침해 행위가 성립되어 권리침해자의 권리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시켜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권리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유형, 대상 및 범위를 명기해야 하며, 권리침해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5) 처리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도경과 기한.  처리결정서에는 專利업무 관리부서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18조** 專利업무 관리부서 또는 인민법원이 권리침해가 성립된다고 인정하여 권리침해자의 권리침해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결정이나 판결을 내린 후 피청구인이 동일 專利권에 대해 같은 유형의 권리침해 행위를 다시 행하여 專利권자나 이해관계자가 그에 대해 처리하도록 청구한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권리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직접 명령할 수 있다.  **제19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권 침해분쟁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입안 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안건을 종결지어야 한다. 안건이 특별히 복잡하여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는 專利업무 관리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고 기간을 연장할지라도 최장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건 처리과정에서의 공고, 감정, 중지 등 시간은 전항에서 기술한 안건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3장 專利분쟁의 조정**  **제20조** 專利업무 관리부서에 專利분쟁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나 주요책임자의 성명, 직무, 대리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대리기관의 명칭, 주소  (2) 피청구인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3) 조정을 요구하는 구체적 사항과 이유.  專利권 침해 배상액수에 대한 조정을 단독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침해 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한 專利업무 관리부서의 처리결정서 부본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제21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조정 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 없이 우송, 직접송달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청구서 부본을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 그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22조** 피청구인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조정에 동의하는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지체 없이 입안하고 동시에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조정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  피청구인이 기한이 지나도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의견진술서 중에 조정을 거절한다고 표시한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입안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아울러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제23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專利분쟁을 조정할 때 유관단체 또는 개인을 요청하여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은 조정에 협조를 해야 한다.  **제24조** 당사자가 조정을 통해 합의를 달성한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조정합의서를 작성하고 직인을 날인한 후 당사자 쌍방의 서명이나 직인을 받는다.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당해 안건을 취소하는 것으로 안건을 종결하고 당사자 쌍방에게 통지한다.  **제25조** 專利출원권 또는 專利권의 귀속분쟁으로 인해 조정을 청구하는 경우 당사자는 專利업무 관리부서의 수리통지서를 지참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에 당해 專利출원 또는 專利권 관련 절차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를 달성한 경우 당사자는 조정합의서를 지참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회복수속을 해야 하며, 합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는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제시한 안건 취소통지서를 지참하고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회복 수속을 해야 한다. 중지 청구일로부터 1년이 만료됨에도 불구하고 중지안건의 연장을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스스로 관련 절차를 회복한다.  **제4장 專利 모조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제26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모조 혐의 행위를 발견했거나 신고를 받아 專利모조 혐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안해야 하며, 아울러 2명 또는 그 이상의 안건 처리요원을 지명하여 조사 처리하게 해야 한다.  **제27조** 專利 모조행위에 대한 조사 처리는 행위 발생지의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관할한다.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관할권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공동 상급이 되는 인민정부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관할을 지정하며, 공동 상급이 되는 인민정부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이 관할을 지정한다.  **제28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 모조혐의가 있는 제품을 차압, 압류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압, 압류 시에는 당사자에게 관련 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 모조협의가 있는 제품을 차압, 압류 시에는 당장에서 점검하여 기록하고 리스트를 작성해야 하며, 당사자와 안건 처리요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이나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 안건 처리요원은 기록에 해당 사항을 밝혀야 한다. 리스트는 당사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한다.  **제29조** 안건 조사가 종결된 후에는 專利업무 관리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얻고 안건상황에 따라 각기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1) 專利 모조협의가 성립되어 처벌을 가해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가한다.  (2) 專利 모조협의가 경미하고 바로 시정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한다.  (3) 專利 모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안건을 취소한다.  (4) 범죄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한다.  **제30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처벌결정을 내리게 된 사실, 이유 및 의거를 고지해야 하며, 아울러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향유하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비교적 큰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청문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청문을 조직해야 한다.  **제31조** 당사자는 진술과 변호를 할 수 있으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당사자의 변호로 인해 행정처벌을 가중하지 못한다.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 이유 및 증거를 규명해야 한다. 당사자가 제출한 사실이 확실하고 이유가 성립되는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마땅히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32조** 사정이 복잡하거나 중대 불법행위로 인해 보다 중한 행정처벌을 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專利업무 관리부서 책임자의 집단적 토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제33조** 조사를 거쳐 專利 모조행위가 성립되어 처벌을 가해야 하는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처벌결정서를 작성하고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 주소  (2) 專利 모조행위가 성립됨을 인정하는 증거, 이유 및 의거  (3) 처벌 내용 및 이행방식  (4) 처벌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도경과 기한.  처벌결정서에는 專利업무 관리부서의 직인을 날인해야 한다.  **제34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 모조안건을 조사 처리 시에는 입안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안건을 종결지어야 한다. 안건이 특별히 복잡하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專利업무 관리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고 연장하는 기한은 최장 15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안건 처리과정에서 청문, 공고 등 시간은 전 항에서 기술한 안건 처리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장 조사 및 증거취득**  **제35조** 專利권 침해분쟁 처리과정에서 당사자가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스스로 일부 증거를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專利업무 관리부서의 조사 및 증거취득에 대한 협조를 청구할 수 있다.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상황에 비추어 관련 증거의 조사 수집여부를 결정한다.  專利권 침해분쟁을 처리하거나 專利 모조행위를 조사 처리하는 중에서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필요 시 그 직권에 의거하여 관련 증거를 조사 취득할 수 있다.  법집행요원이 관련 증거를 조사 취득 시에는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행정 법집행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와 관계자는 서로 협조하고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하며, 거절하거나 저애해서는 아니된다.  **제36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증거를 조사 취득 시에는 안건과 관련한 계약, 장부 등 필요한 문건을 열람, 복제할 수 있으며, 당사자와 증인에 대해 질문할 수 있으며, 측정, 촬영, 녹화 등 방식으로 현장을 검사할 수 있다. 제조방법 專利권에 대한 침해혐의가 있는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조사대상자에게 현장 시현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증거를 조사 취득 시에는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기록은 안건 처리요원, 조사대상 단체나 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대상 단체나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 안건 처리요원은 해당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제37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증거를 조사 취득 시에는 표본추출 방식을 취할 수 있다.  제품 專利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권리침해 혐의가 있는 제품 중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샘플로 할 수 있으며, 방법 專利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해 방법에 따라 직접 취득하는 혐의 제품 중에서 일부를 추출하여 샘플로 할 수 있다. 추출 샘플의 수량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데에 국한된다.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샘플 추출 시 기록과 리스트를 작성하여 추출 샘플의 명칭, 특성, 수량 및 보관장소를 밝혀야 하며, 안건 처리요원, 조사대상 단체나 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대상 단체나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 안건 처리요원은 이를 기록에 밝히며, 리스트는 조사대상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한다.  **제38조** 증거가 소멸될 수 있거나 향후 취득하기 어렵고 샘플 추출도 어려운 상황에서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먼저 등기보존을 하고 7일 이내에 결정할 수 있다.  조사대상 단체나 개인은 등기보존을 거친 증거를 소각하거나 전이하지 못한다.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등기보존 시 기록과 리스트를 작성하여 등기보존 증거의 명칭, 특성, 수량 및 보관장소를 밝혀야 하며, 안건 처리요원, 조사대상 단체나 개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조사대상 단체나 개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절하는 경우 안건 처리요원은 이를 기록에 밝히며, 리스트는 조사대상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한다.  **제39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기타 專利업무 관리부서에 증거 조사 취득을 위탁해야 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요구를 제기해야 한다. 수탁부서는 지체 없이 열심히 증거 조사취득에 협조하고 빠른 시한 내에 답변을 해야 한다.  **제40조** 세관이 압류한 권리침해 혐의화물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때 專利업무 관리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법에 따라 협조를 해야 한다.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수출입 화물의 專利안건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법적 책임**  **제41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권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여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권리침해자의 권리침해 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권리침해 행위를 제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권리침해자가 專利권 침해 제품을 제조한 경우 그 제조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권리침해 제품의 제조에 사용한 전문설비, 금형을 소각하고 아직 판매하지 아니한 권리침해 제품을 판매,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 어떠한 형식으로도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며, 권리침해 제품을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침해자에게 당해 제품을 소각하도록 명령한다.  (2) 권리침해자가 專利권자의 허가를 얻지 않고 專利방법을 사용한 경우 권리침해자에게 그 사용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專利방법의 실시에 사용한 전문설비, 금형을 소각하고 아직 판매하지 아니한, 專利방법에 따라 직접 얻은 권리침해 제품을 판매,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 어떠한 형식으로도 이를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며, 권리침해 제품을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침해자에게 당해 제품을 소각하도록 명령한다.  (3) 권리침해자가 專利권 침해제품을 판매하거나 專利방법에 따라 직접 얻은 권리침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아직 판매를 하지 아니한 권리침해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또는 어떠한 기타의 형식으로도 이를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며, 아직 판매하지 아니한 권리침해 제품을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침해자에게 당해 제품을 소각하도록 명령한다.  (4) 권리침해자가 專利권 침해제품이나 專利방법에 따라 직접 얻은 권리침해 제품의 판매를 약속한 경우 그가 약속한 판매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영향을 제거함과 아울러 그 어떠한 실질적인 판매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한다.  (5) 권리침해자가 專利권 침해제품이나 專利방법에 따라 직접 얻은 권리침해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그 수입행위를 즉시 중지하도록 명령하며, 권리침해 제품이 이미 수입된 경우에는 당해 권리침해 제품을 판매, 사용하거나 어떠한 기타 형식으로도 시장에 출시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며, 권리침해 제품을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침해자에게 당해 제품을 소각하도록 명령한다. 권리침해 제품을 아직 수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결정을 관련 세관에 통지할 수 있다.  (6)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시키는 기타 필요한 조치.  **제42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권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동시에 권리침해자에게 즉시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시키는 처리결정을 내린 후 청구대상자가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기간에는 처리결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 행위가 성립됨을 인정한 專利업무 관리부서의 처리결정 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지도 않고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하지도 아니한 경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43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 모조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위자에게 아래와 같은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1) 專利권을 취득하지 못한 제품 또는 그 포장에 專利표지를 표기하거나 專利권이 무효 선고를 받았거나 종료된 후 계속 제품 또는 그 포장에 專利표지를 표기하거나, 또는 허가 없이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타인의 專利번호를 표기한 경우 지체 없이 표기행위를 중지시키고 아직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 또는 그 포장상의 專利번호를 제거하게 하며, 제품상의 專利표지를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제품이나 포장을 소각하게 한다.  (2) 제(1)호에서 기술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즉시 판매행위를 중지시킨다.  (3) 제품설명서 등 자료 중에 專利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기술이나 디자인을 專利기술 또는 專利디자인으로 칭하고 專利출원을 專利로 칭하거나 또는 타인의 허가가 없이 타인의 專利번호를 사용하여 공중으로 하여금 관련 기술이나 디자인을 타인의 專利기술이나 專利디자인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에는 즉시 당해 자료의 배포를 중지시키고 아직 배포하지 아니한 자료는 소각하는 동시에 영향을 제거하게 한다.  (4) 專利증서, 專利문건 또는 專利출원서류를 위조, 변조한 경우에는 즉시 위조 또는 변조 행위를 중지시키고 위조 또는 변조한 專利증서, 專利서류 또는 專利출원서류를 소각하는 동시에 영향을 제거하게 한다.  (5) 기타 필요한 시정 조치.  **제44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 조모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하여 처벌결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45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專利 모조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 시에는 아래의 방식에 따라 행위자의 불법소득을 확정할 수 있다.  (1) 타인의 專利를 모조한 제품을 판매한 경우 제품의 판매가격에 판매제품의 수량을 곱한 합을 그 불법소득으로 한다.  (2) 타인의 專利를 모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수취비용을 불법소득으로 한다.  **제46조** 專利업무 관리부서가 처벌하기로 결정한 후 당사자가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행정재심 또는 소송기간에는 처벌결정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7조** 專利 모조행위가 있는 행위자는 처벌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정한 은행에 가서 처벌결정서상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간이 만료되어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매일 벌금액수의 3%에 따라 벌금을 추가 징수한다.  **제48조** 법에 따라 실시하는 專利업무 관리부서의 공무집행을 거절하거나 저애하는 경우 공안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며, 사안이 심각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기관은 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  **제7장 부 칙**  **제49조** 專利업무 관리부서는 우송, 직접송달, 유치송달, 공고송달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관련 법률문서와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제50조** 이 방법은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제51조** 이 방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12월 17일 국가지식재산권국 령 제19호로 반포한 《專利 행정 법집행 방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  | **专利行政执法办法**  国家知识产权局第六十号  　　《专利行政执法办法》已经局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11年2月1日起施行。  局 长 田力普  二○一○年十二月二十九日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规范专利行政执法行为，保护专利权人和社会公众的合法权益，维护社会主义市场经济秩序，根据《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实施细则》以及其他有关法律法规，制定本办法。  **第二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开展专利行政执法，即处理专利侵权纠纷、调解专利纠纷以及查处假冒专利行为，适用本办法。  **第三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专利侵权纠纷应当以事实为依据、以法律为准绳，遵循公正、及时的原则。  　　管理专利工作的部门调解专利纠纷，应当遵循自愿、合法的原则，在查明事实、分清是非的基础上，促使当事人相互谅解，达成调解协议。  　　管理专利工作的部门查处假冒专利行为，应当以事实为依据、以法律为准绳，遵循公正、公开的原则，给予的行政处罚应当与违法行为的事实、性质、情节以及社会危害程度相当。  **第四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设置专门机构或者配备专职执法人员开展专利行政执法。  　　案件承办人员应当持有国家知识产权局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颁发的专利行政执法证件。案件承办人员执行公务时应当严肃着装。  **第五条** 对有重大影响的专利侵权纠纷案件、假冒专利案件，国家知识产权局在必要时可以组织有关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查处。  　　对于行为发生地涉及两个以上省、自治区、直辖市的重大案件，有关省、自治区、直辖市管理专利工作的部门可以报请国家知识产权局协调处理或者查处。  　　管理专利工作的部门开展专利行政执法遇到疑难问题的，国家知识产权局应当给予必要的指导和支持。  **第六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可以依据本地实际，委托有实际处理能力的市、县级人民政府设立的专利管理部门查处假冒专利行为、调解专利纠纷。  　　委托方应当对受托方查处假冒专利和调解专利纠纷的行为进行监督和指导，并承担法律责任。  **第七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指派的案件承办人员与当事人有直接利害关系的，应当回避，当事人有权申请其回避。当事人申请回避的，应当说明理由。  　　案件承办人员的回避，由管理专利工作部门的负责人决定。是否回避的决定作出前，被申请回避的人员应当暂停参与本案的工作。  **第二章 专利侵权纠纷的处理**  **第八条** 请求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专利侵权纠纷的，应当符合下列条件：  　　（一）请求人是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  　　（二）有明确的被请求人；  　　（三）有明确的请求事项和具体事实、理由；  　　（四）属于受案管理专利工作的部门的受案和管辖范围；  　　（五）当事人没有就该专利侵权纠纷向人民法院起诉。  　　第一项所称利害关系人包括专利实施许可合同的被许可人、专利权人的合法继承人。专利实施许可合同的被许可人中，独占实施许可合同的被许可人可以单独提出请求；排他实施许可合同的被许可人在专利权人不请求的情况下，可以单独提出请求；除合同另有约定外，普通实施许可合同的被许可人不能单独提出请求。  **第九条** 请求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专利侵权纠纷的，应当提交请求书及下列证明材料：  　　（一）主体资格证明，即个人应当提交居民身份证或者其他有效身份证件，单位应当提交有效的营业执照或者其他主体资格证明文件副本及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身份证明；  　　（二）专利权有效的证明，即专利登记簿副本，或者专利证书和当年缴纳专利年费的收据。  　　专利侵权纠纷涉及实用新型或者外观设计专利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可以要求请求人出具由国家知识产权局作出的专利权评价报告（实用新型专利检索报告）。  　　请求人应当按照被请求人的数量提供请求书副本及有关证据。  **第十条** 请求书应当记载以下内容：  　　（一）请求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姓名、职务，委托代理人的，代理人的姓名和代理机构的名称、地址；  　　（二）被请求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  　　（三）请求处理的事项以及事实和理由。  　　有关证据和证明材料可以以请求书附件的形式提交。  　　请求书应当由请求人签名或者盖章。  **第十一条** 请求符合本办法第八条规定条件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在收到请求书之日起5个工作日内立案并通知请求人，同时指定3名或者3名以上单数承办人员处理该专利侵权纠纷；请求不符合本办法第八条规定条件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在收到请求书之日起5个工作日内通知请求人不予受理，并说明理由。  **第十二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在立案之日起5个工作日内将请求书及其附件的副本送达被请求人，要求其在收到之日起15日内提交答辩书并按照请求人的数量提供答辩书副本。被请求人逾期不提交答辩书的，不影响管理专利工作的部门进行处理。  　　被请求人提交答辩书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在收到之日起5个工作日内将答辩书副本送达请求人。  **第十三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专利侵权纠纷案件时，可以根据当事人的意愿进行调解。双方当事人达成一致的，由管理专利工作的部门制作调解协议书，加盖其公章，并由双方当事人签名或者盖章。调解不成的，应当及时作出处理决定。  **第十四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专利侵权纠纷，可以根据案情需要决定是否进行口头审理。管理专利工作的部门决定进行口头审理的，应当至少在口头审理3个工作日前将口头审理的时间、地点通知当事人。当事人无正当理由拒不参加的，或者未经允许中途退出的，对请求人按撤回请求处理，对被请求人按缺席处理。  **第十五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举行口头审理的，应当将口头审理的参加人和审理要点记入笔录，经核对无误后，由案件承办人员和参加人签名或者盖章。  **第十六条** 专利法第五十九条第一款所称的“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权的保护范围以其权利要求的内容为准”，是指专利权的保护范围应当以其权利要求记载的技术特征所确定的范围为准，也包括与记载的技术特征相等同的特征所确定的范围。等同特征是指与记载的技术特征以基本相同的手段，实现基本相同的功能，达到基本相同的效果，并且所属领域的普通技术人员无需经过创造性劳动就能够联想到的特征。  **第十七条** 除达成调解协议或者请求人撤回请求之外，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专利侵权纠纷应当制作处理决定书，写明以下内容：  　　（一）当事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  　　（二）当事人陈述的事实和理由；  　　（三）认定侵权行为是否成立的理由和依据；  　　（四）处理决定认定侵权行为成立并需要责令侵权人立即停止侵权行为的，应当明确写明责令被请求人立即停止的侵权行为的类型、对象和范围；认定侵权行为不成立的，应当驳回请求人的请求；  　　（五）不服处理决定提起行政诉讼的途径和期限。  　　处理决定书应当加盖管理专利工作的部门的公章。  **第十八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或者人民法院作出认定侵权成立并责令侵权人立即停止侵权行为的处理决定或者判决之后，被请求人就同一专利权再次作出相同类型的侵权行为，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请求处理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可以直接作出责令立即停止侵权行为的处理决定。  **第十九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专利侵权纠纷，应当自立案之日起4个月内结案。案件特别复杂需要延长期限的，应当由管理专利工作的部门负责人批准。经批准延长的期限，最多不超过1个月。  　　案件处理过程中的公告、鉴定、中止等时间不计入前款所述案件办理期限。  **第三章 专利纠纷的调解**  **第二十条** 请求管理专利工作的部门调解专利纠纷的，应当提交请求书。  　　请求书应当记载以下内容：  　　（一）请求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姓名、职务，委托代理人的，代理人的姓名和代理机构的名称、地址；  　　（二）被请求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  　　（三）请求调解的具体事项和理由。  　　单独请求调解侵犯专利权赔偿数额的，应当提交有关管理专利工作的部门作出的认定侵权行为成立的处理决定书副本。  **第二十一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收到调解请求书后，应当及时将请求书副本通过寄交、直接送交或者其他方式送达被请求人，要求其在收到之日起15日内提交意见陈述书。  **第二十二条** 被请求人提交意见陈述书并同意进行调解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及时立案，并通知请求人和被请求人进行调解的时间和地点。  　　被请求人逾期未提交意见陈述书，或者在意见陈述书中表示不接受调解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不予立案，并通知请求人。  **第二十三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调解专利纠纷可以邀请有关单位或者个人协助，被邀请的单位或者个人应当协助进行调解。  **第二十四条** 当事人经调解达成协议的，由管理专利工作的部门制作调解协议书，加盖其公章，并由双方当事人签名或者盖章；未能达成协议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以撤销案件的方式结案，并通知双方当事人。  **第二十五条** 因专利申请权或者专利权的归属纠纷请求调解的，当事人可以持管理专利工作的部门的受理通知书请求国家知识产权局中止该专利申请或者专利权的有关程序。  　　经调解达成协议的，当事人应当持调解协议书向国家知识产权局办理恢复手续；达不成协议的，当事人应当持管理专利工作的部门出具的撤销案件通知书向国家知识产权局办理恢复手续。自请求中止之日起满1年未请求延长中止的，国家知识产权局自行恢复有关程序。  **第四章 假冒专利行为的查处**  **第二十六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发现或者接受举报发现涉嫌假冒专利行为的，应当及时立案，并指定两名或者两名以上案件承办人员进行调查。  **第二十七条** 查处假冒专利行为由行为发生地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管辖。  　　管理专利工作的部门对管辖权发生争议的，由其共同的上级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指定管辖；无共同上级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的，由国家知识产权局指定管辖。  **第二十八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查封、扣押涉嫌假冒专利产品的，应当经其负责人批准。查封、扣押时，应当向当事人出具有关通知书。  　　管理专利工作的部门查封、扣押涉嫌假冒专利产品，应当当场清点，制作笔录和清单，由当事人和案件承办人员签名或者盖章。当事人拒绝签名或者盖章的，由案件承办人员在笔录上注明。清单应当交当事人一份。  **第二十九条** 案件调查终结，经管理专利工作的部门负责人批准，根据案件情况分别作如下处理：  　　（一）假冒专利行为成立应当予以处罚的，依法给予行政处罚；  　　（二）假冒专利行为轻微并已及时改正的，免予处罚；  　　（三）假冒专利行为不成立的，依法撤销案件；  　　（四）涉嫌犯罪的，依法移送公安机关。  **第三十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作出行政处罚决定前，应当告知当事人作出处罚决定的事实、理由和依据，并告知当事人依法享有的权利。  　　管理专利工作的部门作出较大数额罚款的决定之前，应当告知当事人有要求举行听证的权利。当事人提出听证要求的，应当依法组织听证。  **第三十一条** 当事人有权进行陈述和申辩，管理专利工作的部门不得因当事人申辩而加重行政处罚。  　　管理专利工作的部门对当事人提出的事实、理由和证据应当进行核实。当事人提出的事实属实、理由成立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予以采纳。  **第三十二条** 对情节复杂或者重大违法行为给予较重的行政处罚的，应当由管理专利工作的部门负责人集体讨论决定。  **第三十三条** 经调查，假冒专利行为成立应当予以处罚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制作处罚决定书，写明以下内容：  　　（一）当事人的姓名或者名称、地址；  　　（二）认定假冒专利行为成立的证据、理由和依据；  　　（三）处罚的内容以及履行方式；  　　（四）不服处罚决定申请行政复议和提起行政诉讼的途径和期限。  　　处罚决定书应当加盖管理专利工作的部门的公章。  **第三十四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查处假冒专利案件，应当自立案之日起1个月内结案。案件特别复杂需要延长期限的，应当由管理专利工作的部门负责人批准。经批准延长的期限，最多不超过15日。  　　案件处理过程中听证、公告等时间不计入前款所述案件办理期限。  **第五章 调查取证**  **第三十五条** 在专利侵权纠纷处理过程中，当事人因客观原因不能自行收集部分证据的，可以书面请求管理专利工作的部门调查取证。管理专利工作的部门根据情况决定是否调查收集有关证据。  　　在处理专利侵权纠纷、查处假冒专利行为过程中，管理专利工作的部门可以根据需要依职权调查收集有关证据。  　　执法人员调查收集有关证据时，应当向当事人或者有关人员出示其行政执法证件。当事人和有关人员应当协助、配合，如实反应情况，不得拒绝、阻挠。  **第三十六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调查收集证据可以查阅、复制与案件有关的合同、账册等有关文件；询问当事人和证人；采用测量、拍照、摄像等方式进行现场勘验。涉嫌侵犯制造方法专利权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可以要求被调查人进行现场演示。  　　管理专利工作的部门调查收集证据应当制作笔录。笔录应当由案件承办人员、被调查的单位或者个人签名或者盖章。被调查的单位或者个人拒绝签名或者盖章的，由案件承办人员在笔录上注明。  **第三十七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调查收集证据可以采取抽样取证的方式。  　　涉及产品专利的，可以从涉嫌侵权的产品中抽取一部分作为样品；涉及方法专利的，可以从涉嫌依照该方法直接获得的产品中抽取一部分作为样品。被抽取样品的数量应当以能够证明事实为限。  　　管理专利工作的部门进行抽样取证应当制作笔录和清单，写明被抽取样品的名称、特征、数量以及保存地点，由案件承办人员、被调查的单位或者个人签字或者盖章。被调查的单位或者个人拒绝签名或者盖章的，由案件承办人员在笔录上注明。清单应当交被调查人一份。  **第三十八条** 在证据可能灭失或者以后难以取得，又无法进行抽样取证的情况下，管理专利工作的部门可以进行登记保存，并在7日内作出决定。  　　经登记保存的证据，被调查的单位或者个人不得销毁或者转移。  　　管理专利工作的部门进行登记保存应当制作笔录和清单，写明被登记保存证据的名称、特征、数量以及保存地点，由案件承办人员、被调查的单位或者个人签名或者盖章。被调查的单位或者个人拒绝签名或者盖章的，由案件承办人员在笔录上注明。清单应当交被调查人一份。  **第三十九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需要委托其他管理专利工作的部门协助调查收集证据的，应当提出明确的要求。接受委托的部门应当及时、认真地协助调查收集证据，并尽快回复。  **第四十条** 海关对被扣留的侵权嫌疑货物进行调查，请求管理专利工作的部门提供协助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依法予以协助。  　　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涉及进出口货物的专利案件的，可以请求海关提供协助。  **第六章 法律责任**  **第四十一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认定专利侵权行为成立，作出处理决定，责令侵权人立即停止侵权行为的，应当采取下列制止侵权行为的措施：  　　（一）侵权人制造专利侵权产品的，责令其立即停止制造行为，销毁制造侵权产品的专用设备、模具，并且不得销售、使用尚未售出的侵权产品或者以任何其他形式将其投放市场；侵权产品难以保存的，责令侵权人销毁该产品；  　　（二）侵权人未经专利权人许可使用专利方法的，责令侵权人立即停止使用行为，销毁实施专利方法的专用设备、模具，并且不得销售、使用尚未售出的依照专利方法所直接获得的侵权产品或者以任何其他形式将其投放市场；侵权产品难以保存的，责令侵权人销毁该产品；  　　（三）侵权人销售专利侵权产品或者依照专利方法直接获得的侵权产品的，责令其立即停止销售行为，并且不得使用尚未售出的侵权产品或者以任何其他形式将其投放市场；尚未售出的侵权产品难以保存的，责令侵权人销毁该产品；  　　（四）侵权人许诺销售专利侵权产品或者依照专利方法直接获得的侵权产品的，责令其立即停止许诺销售行为，消除影响，并且不得进行任何实际销售行为；  　　（五）侵权人进口专利侵权产品或者依照专利方法直接获得的侵权产品的，责令侵权人立即停止进口行为；侵权产品已经入境的，不得销售、使用该侵权产品或者以任何其他形式将其投放市场；侵权产品难以保存的，责令侵权人销毁该产品；侵权产品尚未入境的，可以将处理决定通知有关海关；  　　（六）停止侵权行为的其他必要措施。  **第四十二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作出认定专利侵权行为成立并责令侵权人立即停止侵权行为的处理决定后，被请求人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的，在诉讼期间不停止决定的执行。  　　侵权人对管理专利工作的部门作出的认定侵权行为成立的处理决定期满不起诉又不停止侵权行为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可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四十三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认定假冒专利行为成立的，应当责令行为人采取下列改正措施：  　　（一）在未被授予专利权的产品或者其包装上标注专利标识、专利权被宣告无效后或者终止后继续在产品或者其包装上标注专利标识或者未经许可在产品或者产品包装上标注他人的专利号的，立即停止标注行为，消除尚未售出的产品或者其包装上的专利标识；产品上的专利标识难以消除的，销毁该产品或者包装；  　　（二）销售第（一）项所述产品的，立即停止销售行为；  　　（三）在产品说明书等材料中将未被授予专利权的技术或者设计称为专利技术或者专利设计，将专利申请称为专利，或者未经许可使用他人的专利号，使公众将所涉及的技术或者设计误认为是他人的专利技术或者专利设计的，立即停止发放该材料，销毁尚未发出的材料，并消除影响；  　　（四）伪造或者变造专利证书、专利文件或者专利申请文件的，立即停止伪造或者变造行为，销毁伪造或者变造的专利证书、专利文件或者专利申请文件，并消除影响；  　　（五）其他必要的改正措施。  **第四十四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认定假冒专利行为成立，作出处罚决定的，应当予以公告。  **第四十五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认定假冒专利行为成立的，可以按照下列方式确定行为人的违法所得：  　　（一）销售假冒他人专利的产品的，以产品销售价格乘以所销售产品的数量作为其违法所得；  　　（二）订立假冒他人专利的合同的，以收取的费用作为其违法所得。  **第四十六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作出处罚决定后，当事人申请行政复议或者向人民法院提起行政诉讼的，在行政复议或者诉讼期间不停止决定的执行。  **第四十七条** 假冒专利行为的行为人应当自收到处罚决定书之日起15日内，到指定的银行缴纳处罚决定书写明的罚款；到期不缴纳的，每日按罚款数额的百分之三加处罚款。  **第四十八条** 拒绝、阻碍管理专利工作的部门依法执行公务的，由公安机关根据《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给予处罚；情节严重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第七章 附 则**  **第四十九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可以通过寄交、直接送交、留置送达、公告送达或者其他方式送达有关法律文书和材料。  **第五十条** 本办法由国家知识产权局负责解释。  **第五十一条** 本办法自2011年2月1日起施行。2001年12月17日国家知识产权局令第十九号发布的《专利行政执法办法》同时废止。 |